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4. 11. 26. 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4. 11. 15.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: 2024. 11. 18.

다. 상정일자: 제272회 제2차 정례회 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(2024. 11. 26.)
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 【제안설명자: 교육정책과장 이연화】

가. 제안이유

상위법령인 「평생교육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관련 조례를 개정 하여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자 본 조례를 개정 하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상위법 일부 개정에 따른 용어 정의 및 기능 등 정비(안 제2조제1항, 안 제2조제2항, 안 제10조, 안 제13조)
- 동별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지정 운영 의무화(안 제9조제3항)
- O 개정에 따른 띄어쓰기 수정 등 조문 정비

다. 참고사항

- O 「평생교육법」 제2조, 제21조, 제21조의3, 제26조
- O 입법예고 : 2024. 8. 29. ~ 9. 18. 결과: 의견 없음

3. 검토보고(전문위원 유준상)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상위법령인「평생교육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자 하는 것임.

O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

제2조(정의)

- "문자해득교육" → "문해교육, 직업능력 향상교육, 성인 진로개발역 량"으로 변경
- 평생교육 대상과 범위를 구체화하고 현대적 교육 요구를 반영
- "연구·정책개발·평생교육종사자에 대한 연수" → "평생교육 프로 그램의 개발·운영,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·훈련"으로 변경
- 연구와 정책 개발 중심에서 실질적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으로 범 위를 확대

제9조(평생교육시설)

- 제1항 단서 삭제 및 제3항 신설: 동별 평생학습센터 설치·지정을 의무화하여 근거리 학습권 보장

제10조(평생교육 진흥 사업)

- 기존 제1호 및 제6호 삭제

- 새로운 제7호~제9호 신설: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·훈련, 동별 평생학습센터 지정·운영. 평생학습 축제 및 문화행사

제12조(운영비 변경)

- "운영비와 학습경비" → "필요한 경비"로 변경함으로 유연한 예산 운용 가능성 확대

제13조(평생학습관의 운영 인력 배치)

- 평생교육사 배치를 의무화하고 운영에 필요한 소장 및 직원 포함 명시

제14조(평생학습센터의 역할)

- "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" → "평생학습센터"로 간소화

O 종합 검토의견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의 접근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, 행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된 안건으로 동(洞) 평생 학습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 주민의 근거리 학습권 증대 및 주민의 보편적 학습권리를 보장하여 평생학습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, 평 생교육 종사자 지원을 통해 구민 중심의 평생교육 환경 조성 및 지 역사회의 평생교육 접근성과 품질개선을 위해 필요하며,
- 평생교육을 통하여 주민 삶의 질과 지역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 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 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 해 본 조례의 개정은 그 타당성과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됨.
- 다만, 현실적 제약을 고려한 재정·운영 계획 및 사전 홍보와 의견 수렴의 선행이 필요하고, 동별 평생학습센터 지정·운영은 지역 간 교육 불균형을 완화하고 접근성을 강화하여 평생학습 참여 활성화 방안과 시설 설치 및 인력 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초기 운영

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 등을 통해 평생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는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- 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 략
- 5. 토론요지: 없 음
- 6. 심사결과: 원안가결
- 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: 없 음
- 8. 기 타: 없 음

「평생교육법」

[시행 2024. 5. 17.] [법률 제19588호, 2023. 8. 8., 타법개정]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1. "평생교육"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, 성인 문해교육, 직업능력 향상교육,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, 인문교양교육, 문화예술교육,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.
- 2. "평생교육기관"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·법인 또는 단체 를 말한다.
- 가. 이 법에 따라 인가·등록·신고된 시설·법인 또는 단체
- 나.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 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
- 다.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·법인 또는 단체
- 3. "문해교육"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(文字解得)능력을 포함한 사회적・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.
- 4. "평생교육사업"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직·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.
- 5. "평생교육이용권" 이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 기재(전 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)된 증표를 말한다.
- 6. "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"(이하 "성인 진로교육"이라 한다)이란 성인이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고 진로를 인식・탐색・준비・결정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진로수업・진로심리검사・진로상담・진로정보・진로체험 및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.

제21조(시·군·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·운영 등) ① 시·도교육감 및 시장·군수· 자치구의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 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·운영하여야 한다.

- ② 시·도교육감 및 시장·군수·자치구의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.
- ③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- 1.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・운영
- 1의2.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운영
- 2. 평생교육 상담
- 3.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 훈련
- 4.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 제공
- 5.제21조의3에 따른 읍·면·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
- 6.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
-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생학습관의 설치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- 제21조의3(읍·면·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) ① 시장·군수·자치구의 구청장은 읍 ·면·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읍・면・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26조(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) ① 평생교육기관에는제24조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.

- ②「유아교육법」,「초·중등교육법」및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의 장은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할 때에는 평생교육사를 채용할 수 있다.
- ③제20조에 따른 시·도평생교육진흥원,제20조의2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및 제21조에 따른 시·군·구평생학습관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.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 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.